

流通의 法理와 立法

崔 星 根*

차 례

- I. 流通産業의 現況 및 流通關係法の 役割
- II. 流通 一般
 - 1. 流通理論
 - 2. 流通에 대한 法的 規律
- III. 商的 流通
 - 1. 商的 流通 理論
 - 2. 商的 流通의 法理
 - 3. 商的 流通 關係法規의 體系
- IV. 物的 流通 - 物流
 - 1. 物的 流通 理論
 - 2. 物的 流通의 法理
 - 3. 物的 流通 關係法規의 體系
- V. 流通産業의 發展과 關聯立法의 展開方向
 - 1. 流通 一般
 - 2. 商的 流通
 - 3. 物的 流通

* 韓國法制研究院 首席研究員, 法學博士

I. 流通産業의 現況 및 流通關係法の 役割

최근들어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流通分野는 실로 변혁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장기적인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먼저 商的 流通 부문을 보면, 다양한 신업태의 도입·신장,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무자료거래가 둔화되면서 본격화된 대기기업의 유통업 진출 확대, 기존 유통업체의 지방 출점,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物的 流通에 있어서는, 물류시설의 수용 한계와 물류비 상승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SOC분야를 포함한 유통단지 내지는 물류시설의 증설, 물류정보화·물류표준화·물류자동화·물류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개선 등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流通分野는 여타의 분야와는 달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물론 社會·文化 기타 고유한 特性을 충실히 반영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변화를 원론적으로 생산중심의 경제가 소비 또는 판매중심의 경제로 중심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분야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구매력의 신장, 기업과 정부의 유통에 대한 인식 재고, WTO 체제의 출범과 1996년의 유통시장개방,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流通이 生産과 消費를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財貨와 서비스의 需給을 調節하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경제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조성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와 함께 流通에 관한 法制度가 자기완결적으로 체계와 내용이 정비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변화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통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유통 일반 및 상적 유통·물적 유통의 경제이론에 터잡아 유통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고 현행 유통관계법의 체계를 정리하며 향후 입법의 방향에 관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流通 一般

1. 流通理論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은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들 企業은 生産·流通·消費라고 하는 경제단계에 있어서 생산 및 유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오늘날과 같이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급속히 변화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제여건하에서는 생산보다 오히려 流通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활동으로부터 유통의 의의를 도출해 본다면, 먼저 經濟活動이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적인 활동을 말하고, 경제활동이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전체적인 틀을 全體經濟라 한다. 그리고 그 범위가 국가단위로 한정되는 경우를 國民經濟라고 하는데 통상 전체경제와 동일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전체경제는 어떠한 통일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경제의 단위이자 구성체를 이루는 수많은 개별적인 실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이러한 하나 하나의 실체를 個別經濟라 한다. 개별경제의 핵심은 기업인데, 기업은 생산과 유통의 中樞機能(line function)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은 附隨機能(staff function)으로 담당하고 있다. 경제사회에서 흔히 '消費없는 企業이 없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곧 소비가 생산의 전제가 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유통인 것이다.¹⁾

流通이란 廣義로는 상품·화폐·유가증권 등이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물리적·사회적으로 이전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는 증여나 공과와 같은 一方的 流通과 매매·교환과 같은 雙方的 流通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商品流通과 資本流通으로 대별된다. 狹義로 流通이라 하는 경우에는 상품유통만을 의미한다.²⁾

1) 한희영, 『마케팅원론』, 다산출판사, 1991, 3~4면.

2) 현행법상 직접 '流通'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규는 없다. 다만 流通産業發展法은 제 2조제1호에서 '流通産業'이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라 정의하여 유통의 실체를 商品流通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품유통은 다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所有權이 이전되는가, 아니면 물리적 이동만 있는가에 따라 전자를 商的 流通, 후자를 物的 流通 이른바 物流이라고 한다. 즉, 商的 流通은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으로서 도매·소매·중개·대리 등이 이에 속하며, 物的 流通은 재화의 장소적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으로서 운송·보관·포장·하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수직적인 연결과정 또는 통로를 流通經路라 하고, 유통경로상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개별적인 유통업체를 流通機關이라 하며, 유통기관이 구성요소가 되어 일정한 지역을 전제로 유형·무형의 상품이 사회적으로 유통되도록 수직적·수평적 분업관계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체를 流通構造라 한다.

2. 流通에 대한 法的 規律

유통에 관한 법규에 대하여는 크게 유통활동이라고 하는 ‘去來’ 측면과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産業’ 측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거래측면에서의 유통과 산업측면에서의 유통은 모두 경제질서의 틀내에서 운용되므로 기본적으로 헌법상 경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憲法상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제119조제2항), 모든 국민은 職業選擇의 自由와 財產權을 保障받고 있다(제15조, 제23조제1항).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제37조제2항)을 받는 이외에는 자유로이 유통활동에 참여하고 도·소매업, 운송업 등 제반 유통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憲法은 經濟秩序에 관한 基本原則을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에 대하여 몇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憲法은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經濟民主化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9조제2항). 둘째, 憲法은 국가에 대하여 농업·어업·낙후지역·중소기업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육성하며, 특히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제123조). 셋째,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消費

者保護運動을 법률로써 보장함과 동시에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제124조, 제127조제2항).

이러한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기초하여 유통에 관한 법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利害關係의 調整 및 去來秩序의 維持를 목적으로 하는 民·商法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통이 생산과 소비간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통신·금융·보험·무역 등의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공해·폐기물처리 등의 관계법령에 이르기까지를 넓은 의미의 유통관계법규로 볼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협의의 유통개념에 좇아 유통관계법규를 商品流通을 직접 규율하는 법규로 한정한다.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포괄하여 유통 일반에 적용되는 법규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流通産業發展法은 종래의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이 통합·폐지되면서 새로이 제정(1997.3 제정)된 유통 일반에 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공산품의 상적 유통과 관련된 유통산업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

Ⅲ. 商的 流通

1. 商的 流通 理論

경영학의 마케팅론에서는 협의의 유통개념을 채용하여 流通의 실체를 商品流通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상품유통에 있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의 흐름과정에 있어 그 구매와 판매에 직접 관련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적 유통 중의 都·小賣業者를 중심으로 한 中間商을 유통의 핵심으로 보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³⁾ 마케팅론상의 유통이란 곧 상품유통을 뜻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품유통 중에서도 상적 유통, 다시 그 중에서도 중간상 즉, 도·소매상의 유통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적

3) 中間商은 다시 당해 유통기관이 직접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에만 관여하는가에 따라 商人中間商(merchant middleman)과 代理中間商(agent middleman)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상인중간상의 두개의 주요집단이 都賣商과 小賣商이다.

유통에 있어서의 流通經路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중간상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는 루트를 말하고, 유통기관이란 곧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상을 말하며, 流通構造란 도매상이나 소매상과 같은 중간상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商的 流通의 機能이란 유통기관으로서의 중간상의 기능을 말하며 商業機能이라고도 한다. ‘중간상은 배제할 수 있어도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없앨 수 없다’는 마케팅의 격언에서도 보듯이, 누군가는 유통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간상이 아니라면 생산자나 소비자라도 이를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 中間商의 機能을 본질적 기능과 부수적 기능으로 분류하면, 우선 本質的 機能은 交換機能인 판매와 구매로서 상품의 집중, 수요·공급의 균형 및 수량의 분산이다. 중간상은 여러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수집 또는 집중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양으로 분할시키고, 여러 가지 구색으로 수집하여 소비자나 기타 수요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집중·균형 및 분산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이 중간상 즉,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인 것이다. 이외에도 중간상은 附隨的 機能으로서 운송이나 보관과 같은 物流機能을 비롯하여 금융·위험부담·시장정보·표준화 등과 같은 助成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2. 商的 流通의 法理

流通産業 그 중에서도 都·小賣業을 중심으로 한 商的 流通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본적으로 현재 고도로 발전한 資本主義 經濟社會의 法的 構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법원칙들은 대체로 商的 流通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적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소유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유통이란 점에서, 상적 유통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去來’라는 측면이 ‘産業’이라는 측면보다 비중을 더한다.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그것에 수반되는 경쟁의 조화가, 경제사회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장과 관계를 갖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거래당사자 또는 소비자에게 去來의 自由를 보장함으로써 流通市場의 自由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유통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요구된다. 현재 상적 유통과 관련하

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의 체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계약의 내용이 대등한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가 民·商法 기타 民·商법의 特別法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속성상 자본의 독점화, 거래당사자간의 상대적 우열, 거래목적물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적 유통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경제활동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등 경제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요구된다. 즉,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그 실체를 잃고 일방에게는 자유를, 타방에게는 부자유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왜곡현상을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상적 유통에 대해서는 民·商法 기타 民·商법의 特別法 이외에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상품의 특성, 소규모 유통업자의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계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3. 商的 流通 關係法規의 體系

商的 流通을 규율하는 法規로는 먼저, 유통 일반에 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공산품의 상적 유통과 관련된 유통산업을 직접 규율하는 流通産業發展法 및 농수산물의 유통 전반을 규율하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이 있다. 다음으로 이들 법규 이외에 상적 유통을 규율하는 법규는 流通活動의 實質的 自由를 도모하기 위하여 公正競争을 促進하는 法規, 流通活動과 관련하여 消費者의 特殊性을 고려한 消費者保護法規, 商品의 特性을 고려한 法規, 小規模 流通業者의 保護 및 流通産業의 均衡發展에 관한 法規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⁴⁾ 이들 상적 유통에 관한 법규는 개별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消費者의 權利確保를 중심으로 한 消費者의 利益保護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통일적·기본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⁵⁾

4) 伊從寬, “流通問題に對する法規制”,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80.2, 28面 참조.

5) 正田 彬, “流通産業に對する法規制の概要”, 『流通産業關係法概說』, 同文館, 1974, 12~13面.

이하에서는 위의 4가지 분류에 기초하여 상적 유통 관계법규를 살펴본다.

(1) 流通活動의 實質的 自由를 도모하기 위하여 公正競爭을 促進하는 法規

流通은 생산과 소비간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시장이며 거기에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에는 公正한 競爭이 유지되고 사업자가 활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품권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2) 流通活動과 관련하여 消費者의 特殊性을 고려한 消費者保護法規

去來上 弱者의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消費者의 적정한 상품의 선택·안전 및 단결 등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약관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3) 商品의 特性을 고려한 法規 등

商品의 特性을 고려한 현행유통관계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을 비롯하여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담배사업법, 인삼산업법, 한국담배인삼공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이 있다. 또한 이들 법률 이외에도 각종 물자규제 및 가격규제에 관한 법규가 있다.

(4) 小規模 流通業者의 保護 및 流通産業의 均衡發展에 관한 法規

中·小小賣業者 등 소규모 유통업자의 保護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法規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규제와 소규모유통업자의 현대화·협업화를 두 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도·소매업의 진흥 및 조정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기타 중소기업관련법규 등이 있다. 이 중 流通産業發展法은 금년 3월 최근의 급속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종래의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하고 내용을 보완함과 아울러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農

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은 1976년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기타 공판장의 설치운영의 근거 법률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소규모유통업자와 관련한 중소기업지원 차원의 범규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등이 있다.

IV. 物的 流通 - 物流

1. 物的 流通 理論

(1) 物流의 概念

物流의 概念은 그 포괄하는 범위와 무엇을 기본적인 요소로 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협의의 물류와 광의의 물류로 나뉘는데, 협의의 물류란 販賣物流(physical distribution)만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광의의 물류란 판매물류는 물론 調達物流(physical supply)와 生産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물류선진국에서는 종래의 물류개념에서 진일보한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로지스틱스란 본래 ‘兵站部’를 의미하는 군사용어로 군수자재의 발주, 생산, 재고관리, 배급통신 등 작전 행동에 필요한 일체의 군수자재관리를 망라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기업에 적용되어 자재조달, 생산, 판매 기타 정보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물류의 개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物流란 ‘생산된 상품을 場所 및 時間的 移動을 통하여 消費者나 利用者에게 이동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經濟活動’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運送·保管·包裝·荷役·物流情報·物流加工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⁶⁾

6) 現行 物流關係法상 물류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貨物流通促進法에서는 物流施設이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

또한 物流은 관점에 따라 사회·국민경제적 입장, 국제경영활동의 입장, 개별기업의 입장, 마케팅활동의 입장, 시스템론적 입장, 경영관리의 입장, 업무수행의 입장 등으로 나뉜다.

(2) 物流의 目的 - 物流合理化

물류의 본질적인 목적은 물류합리화를 통하여 물자의 원활한 공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物流合理化란 궁극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적절한 가격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SIL : 신속하게(speedy), 싸게(low), 안전하게(safely), 확실하게(surely)). 종래의 기업 경영은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라고 하는 3개축의 역학적 균형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재는 '物流'의 등장으로 이러한 역학구조가 변화하여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물류라고 하는 4축에 의한 기업경영이 확립되어 있다.

(3) 物流의 範圍

물류는 크게 物流基本活動과 物流支援活動으로 나뉘고, 물류기본활동은 다시 종적인 단계별로 運送·保管·包裝·荷役으로 분류되며, 물류지원활동은 物流情報와 物流加工 등으로 분류된다.

한편 물류는 취급하는 영역에 따라 공간·내용 및 시스템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물류는 공간적으로 크게 國內物流와 國際物流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물류는 다시 기업내 물류·기업간 물류·산업물류 및 사회물류로 구분되고, 사회물류는 다시 지역사회차원의 물류와 국가차원의 물류로 구분된다. 또한 국제물류는 특정국가와 타국간의 물류·타국들간의 물류 및 전세계 물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물류는 내용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조달물류·생산과정중의 물자를 이동시키는 생산물류 및 협의의 물류개념인 판매물류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물류는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폐쇄형과 순환형(개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쇄형물류란 생산된 물자를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이동시키는 단계까지의 과정만을 의미하고, 순환형물류란 그 이후의 폐기물의 회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문제가 고려된다.

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물류의 기본적인 요소를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제2조제3항).

2. 物的 流通의 法理

商的 流通을 규율하는 法規는 도·소매상간 또는 도·소매상과 소비자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하는 去來 측면에서의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物的 流通에 관한 법규에 있어서는 물론 물류업자간 또는 물류업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도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지만, 상품을 수요자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중의 제활동이라는 물류의 특성상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보다는 ‘물자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류에 있어서는 수직적 단계별로 무리없이 연결되는 것이 물류합리화 내지는 효율화의 관건이다. 그러므로 관계법규에 있어서도 物資의 흐름이 圓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3. 物的 流通 關係法規의 體系

現行法상 물자의 원활한 흐름의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物流 一般에 관한 법규와 物流據點에 관한 법규⁷⁾ 및 運送·保管·包裝·荷役·物流情報 등의 개별물류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物流 一般에 관한 현행법규로는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유통촉진법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流通團地 기타 複合物流施設 등 物流據點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유통촉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個別物流에 관한 현행법규는 물류관계에 기초하여 運送에 관한 법규, 保管에 관한 법규, 包裝에 관한 법규, 荷役に 관한 법규 및 物流情報 등에 관한 법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運送은 크게 陸上運送과 海運·港灣 및 航空運送으로 분류가 되고, 육상운송은 다시 道路運送과 鐵道運送으로 분류할 수 있다. 道路運送에 관한 현행법규로는 도로법, 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육운진흥법

7)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이나 법제도차원에서 물류를 논함에 있어서는, 국토의 지형과 전체 물류산업의 구조상 綜合物流를 담당할 據點이 절실히 요구되고 流通團地 내지는 複合物流施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물류의 개별부문의 하나로 물류의 거점역할을 하는 流通團地 기타 複合物流施設을 따로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있고, 鐵道運送에 관하여는 철도법, 도시철도법, 철도소운송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이 마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海運·港灣에 관한 현행법규로는 해운법, 해운산업육성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있고, 航空運送에 관한 현행법규로는 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있다. 保管 즉, 倉庫에 관한 현행법규로는 화물유통촉진법이 工產品의 보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農産物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다.⁸⁾ 包裝에 관한 현행법규로는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등이 있다. 또한 物流情報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정보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物流標準化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유통촉진법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개별법으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과 산업표준화법이 있다. 物流自動化와 物流共同化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物流技術 및 專門人力의 育成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V. 流通産業의 發展과 關聯立法의 展開方向

1. 流通 一般

(1) 流通은 生産과 消費를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財貨와 서비스의 需給을 調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분야이다.⁹⁾ 유통의 상대적 낙후나 생산분야와의 불균형은 유통단계에서의 비효율과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流通構

8) 農業倉庫業法은 종래 농업창고를 널리 농업인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농업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시대·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법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1996년 8월 폐지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農業協同組合法은 창고사업을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농업창고에 대한 貨物流通促進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農業協同組合이 農業倉庫業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수산업창고업 및 축산업창고업의 경우도 화물유통촉진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9)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1995년 현재 상적 유통을 담당하는 都·小賣業만으로도 GDP의 10.7%를 차지하여 농림수산업의 비중(6.5%, 제조업 29.9%)보다 높고 雇傭人口의 비중도 총고용인구의 18.5%(제조업 23.4%·농림수산업 12.5%)나 차지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활동인구연표, 각년도 참조.

造의 改善과 流通産業의 發展은 유통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관련효과로 인하여 그 의의가 더욱 크다. 流通의 合理化는 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의 제고와 비용의 절감을 가능케 함은 물론 소비자가 적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의 증진에도 기여한다.

(2)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유통산업은 다양한 신업태의 도입·신장,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확대, 기존 유통업체의 지방 출점 가속화,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등을 비롯하여, 유통단지 내지는 물류시설의 증설, 물류정보화·물류표준화·물류자동화·물류공동화 등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유통산업은 현재 製造業 지배형의 流通構造, 流通業體의 零細性和 低生産性,¹⁰⁾ 流通情報化의 미흡, 流通專門人力의 부족, 中小流通業體의 組織化·協業化의 부진, 業態간의 競爭 저조, 物流施設의 부족 및 운영 미숙, 物流過程상의 非效率로 인한 과도한 物流費의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법제도에서 생산·유통 및 소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초를 둔 개선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선시책을 담을 틀인 유통관계법규의 합리적인 체계와 유통에 관한 입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주요사항에 관하여 언급한다.

(3) 먼저 流通關係法規의 體系에 있어서는, 유통 일반에 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규를 축으로 하여 유통을 물적 유통과 상적 유통으로 구분하고 상적 유통은 그 특성상 다시 공산품의 경우와 농수산물의 경우로 나누어, 물적 유통 전반에 적용되는 법규와 공산품의 상적 유통 전반에 적용되는 법규 및 농수산물의 상적 유통 전반에 관한 법규로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음으로 流通政策의 樹立 및 推進과 관련하여서는, 유통 일반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물적 유통에 관한 계획과 공산품의 상적 유통에 관한 계획 및 농수산물의 상적 유통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먼

10) 1994년 기준으로 從業員 4인 이하인 점포의 비중을 보면 都賣業이 전체의 71.7%, 小賣業이 96.8%를 차지하는 등 아직까지 영세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참조.

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면서 유통 일반, 물적 유통, 공산품의 상적 유통 및 농수산물의 상적 유통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후속적으로 각각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의 推進主體가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事後點檢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地方自治制의 본격적인 실시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유통산업이 지방본 사제를 비롯하여 구조조정 또는 투자분산 등 지역밀착경영으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최소한 廣域地方自治團體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광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5) 한편 綜合物流情報電算網¹¹⁾을 비롯하여 바코드,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유통업체간 EDI 등 流通情報化는 물적 유통은 물론 상적 유통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유통정보에 대하여는 유통 일반에 관한 법규에 일반규정을 두고, 물적 유통의 정보화에 관하여는 물적 유통 전반에 적용되는 법규에, 상적 유통의 정보화에 관하여는 공산품의 상적 유통 전반에 적용되는 법규와 농수산물의 상적 유통 전반에 관한 법규에 각각 개별규정을 두는 방안이 유통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촉진하고 부문별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2. 商의 流通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적 유통 부문의 변화를 보면, 다양한 신업태의 도입·신장,¹²⁾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무자료거래가 둔화되면서

11) 貨物流通促進法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8 참조.

12) 특히 할인점(DS ; Discount Store), 대중양판점(GMS ; General Merchandising Store), 회원제창고형 점포(MWC ; Membership Warehouse Club), 하이퍼마켓(Hiper Market), 직판장(Outlet Store) 등 新業態의 도입·확대 측면을 보면, 이들 신업태는 파격적인 할인가격을 바탕으로 물가정책에 항상 고심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一物多價時代를 열면서 유통구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이러한 가격할인 신업태가 '60년대에 DS를 시발로 출현하기 시작하여 '70년대말에 MWC가 정착되면서 성숙기에 있다. 日本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도입되는 단계인데, 백화점과 대중양판점이 전성기를 지나 침체기로 접어드는 국면을 신업태가 대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대중양판점이 도입단계에서 신장하지 못하고 중간단계를 생략한 채로 백화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신업태가 급속히 도입·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小規模小賣店의 경우를 보면, 加盟本部(체

본격화된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확대, 기존 유통업체의 지방 출점,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등이 두드러진다. 이들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구매력의 신장, WTO 체제의 출범과 1996년의 유통시장 개방,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2) 상적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소유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유통이란 점에서, 상적 유통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去來'라는 측면이 '産業'이라는 측면보다 비중을 더한다. 그러므로 상적 유통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당사자 또는 소비자에게 去來의 自由를 보장함으로써 流通市場의 自由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기본적으로 민·상법 기타 민·상법의 특별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사회에 있어서는 속성상 자본의 독점화, 거래당사자간의 상대적 우열, 거래목적물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적 유통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왜곡현상을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상적 유통에 대해서는 民·商法 기타 민·상법의 特別法 이외에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상품의 특성, 소규모 유통업자의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계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 流通産業의 均衡發展을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상적 유통의 전개를 보면, '60년대의 재래시장, '70년대와 '80년대의 재래시장과 백화점·쇼핑센터의 병존 및 '90년대 이후에는 백화점·신입태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商的 流通의 中心圈을 형성하고 있다.¹³⁾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기존의 재래시장 기타 소규모소매점의 자생력 내지는 경쟁력이 문제되는데, 在來市場은 시장환경의 정비·직영점포 비중의 확대 및

인본부)와 加盟店主(체인점주)간의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한 加盟店(체인)營業이 '80년대 초반에 도입된 이래로 유통업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3) 향후의 상적 유통은 무엇보다도 新業態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는 조기에 우리나라의 流通環境 및 地域與件에 맞는 형태로의 정착화가 필요하다. 한편 대중적인 의미의 백화점시대는 머지않아 막을 내릴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百貨店이 다점포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백화점이 신입태와 병존하기 위하여는 高級化 내지 差別化를 추구하는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백화점간에 자본 또는 정보의 제휴 등의 戰略的 提携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화·현대화로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小規模小賣店은 연쇄화 또는 상업조합의 형태로 조직화함으로써 공동구매·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영세성에 기인하는 경쟁력의 상실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地方自治制 時代に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통업의 지역 밀착경영이 필요하다.

(4) 1996년부터 외국인의 종합소매업의 투자에 대한 매장면적 및 점포수에 대한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다. 이로써 外國人 大規模小賣店鋪에 대한 直接投資가 가능해졌다. 한편으로 이러한 流通市場의 開放은 ① 새로운 업태의 도입 촉진 및 이와 관련한 지식 및 노하우의 습득, ② 국내상품 공급업체의 상품 공급의 원활화 및 이윤 증가, ③ 산업의 경쟁촉진으로 인한 효율성의 제고, 원가절감 및 대고객서비스 수준의 향상, ④ 유통관련산업의 성장 촉진, 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 肯定的인 側面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하여는 ① 국내의 영세한 소규모유통업자의 도산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과급효과 확산, ② 외국소비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사치성 소비 및 문화적 공해의 유발, ③ 대규모의국유통업자의 국내진출로 인한 독점이윤과 개발이윤의 발생 등 否定的인 側面이 앞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아니하다.

3. 物的 流通

(1)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기업과 정부가 물류시설의 확충 및 물류비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¹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포함한 물류시설의 증설, 물류정보화·표준화·자동화·공동화 등 물류관리의 개선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企業의 경우를 보면 물류시설, 물류설비, 물류관리 등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물류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사회사를 설립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政府 차원에서도 물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제한 철폐, 행정절차의 간소화 내지는 단순화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세제 기타 행정지원 등 물류관련 사회간

14)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物流費는 총 48조원, GDP 대비 15.7%로서 美國(1993년도 10.5%)과 日本(1993년도 8.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특히 물류비 중에서는 運送費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속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정경제원, 경제백서, 1996, 108~109면 참조.

접자본시설 확충의 지원 및 물류체계의 개선 등을 목표로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물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 물적 유통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물론 상적 유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자와 소비자 또는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도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지만, 상품을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중의 제활동이라는 물류의 특성상 ‘物資의 圓滑한 흐름’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물류관계법의 체계를 정립함에는 효율적인 규율을 통한 ‘물자의 원활한 흐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物流關係法은 위에서 언급한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물류시설 확충의 지원, 물류체계의 개선 등의 내용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물류관계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체계성을 결여한 채 다기화되어 있고 관할기관이 분산된 채 소관업무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규제나 규제완화 또는 지원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물류합리화 내지는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다.

(3) 個別物流部門에 있어서는 먼저 流通團地 기타 物流施設의 경우, 국토의 지형적인 제약과 전체 물류산업의 구조상 종합물류를 담당할 거점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개별물류의 하나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시설 또는 단지에서 수종의 개별물류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므로 그 시설 또는 사업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는 독립적인 개별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運送의 경우는 물자의 공간적 이동을 담당하여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물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운송분야별 특성과 이중운송수단간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운송분야별로 시설과 사업활동에 관하여 각각 개별법을 두고, 복합운송 및 복합운송주선은 물적 유통 전반을 규율하는 법규에서 다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包裝 및 荷役의 경우는 상적 유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공산품 및 농수산물별 상적 유통 전반에 관한 법규에 흡수시켜 그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物流支援活動의 경우, 먼저 物流情報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통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부문별 효율성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유통 일반에 관한 법규에 일반규정을 두고 부문별로 개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며, 物流加工은 보관·포장 및 하역과 직접 관련되므로 보관·포장 및 하역과 마찬가지로 공산품 및 농수산물별 상적 유통 전반에 관한 법규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物流標準化·物流自動化 및 物流共同化등은 물류기본활동과 물류지원활동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므로 물적 유통 전반을 규율하는 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